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23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 고 1. A

2.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1. 12.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지소 2022. 1. 3. 접수 제1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 A는 2014. 8. 10. D(개명전 E, 이하 같다)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년 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 A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차전105071호로 D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2. 4.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 B는 2019. 1. 4. D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 2019년 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 B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차전246호로 D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2. 2. 24. ‘D은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2. 3. 15. 확정되었다.

다. D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D은 2021. 12.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2. 1. 3.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그 원인이 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D에 대하여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각 대여금채권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D의 무자력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은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적극재산		
순번	재산 내용	가액 (원)
1	이 사건 부동산	515,000,000
2	전남 완도군 G 답 357㎡	19,774,100
3	전남 완도군 G 지상 주택건물	
소 계		534,774,100
소극재산		
순번	채무 내용	채무액 (원)
1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채무	100,000,000
2	원고 B에 대한 대여금채무	80,000,000
3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146,410,912
4	F조합에 대한 대여금채무	178,000,000

5	H조합에 대한 대여금채무	17,174,143
6	I 등에 대한 대여금채무 합계	137,500,000
소 계		659,085,055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역시 D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쳤을 뿐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 아파트 [] 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86㎡

대지권의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 대 13012㎡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13012 분의 35.761

- 이 상 -

